



## 법규관련

### 건설교통부공고 2003-196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축사 등 농업용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1가구가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시설의 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공사용임시가설건축물을 본 사업예정지 안에 설치할 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이중부과의 문제가 있으므로 훼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함(안 제36조제1호)

나. 농업용시설의 불법용도변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복설치가 가능하도록 되

어 있는 농업용시설중 공장·물류창고로 쉽게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1가구가 1개만 설치토록 제한함(안 별표1 제2호)

다.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에는 세차시설 설치 가능하나 자동차용LPG충전소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용LPG충전소에도 세차시설을 허용함(안 별표1 제5호 과목)

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옮겨 짓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취락지구(주택10호이상/1만㎡)로만 가능하나, 취락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철거할 수 밖에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취락지구 지정전

이라도 그 예정지로 옮겨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시한을 '금년말('03.12.31)까지'

에서 '취락지구 지정될 때까지'로 연장함(부칙[대통령령 제17884호]제7조)

대통령령 제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별표1 제9호 러목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제36조제1호 단서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표1 제9호 저목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업예정지내에 설치하는 공사용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의 부지

부칙(대통령령 제17884호) 제7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취락지구 지정될 때”로 한다.

별표1 제2호 농림수산업용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축사·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온실은 1가구(개발제한구역안[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별표1 제2호 가목(1)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1가구(개발제한구역안[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가구”로 하고, 나목(1)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300제곱미터(축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콩나물재배사를 별도로 건축할 수 없다)”를 “30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1 제5호 파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가) 단서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고, 가정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나)중 “주유소 안에는”을 “주유소 및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는”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훼손부담금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